

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 (자격) 후보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장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.

제2조 (방식)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,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한다.

제3조 (선거권) 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.

제4조 (선거관리위원회) ① 회장은 총회개최일 3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하다.

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선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5조 (선거 관리)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체 없이 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를 하여 총회 개최 15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하며, 총회 소집이 공고될 때 후보 등록 사항을 함께 공지한다.

② 총회에서 신임회장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종료된다.

제6조 (후보 등록) 회장 후보는 자원자의 의사 표명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그 자격을 얻는다. 단, 자원자 또는 추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(총회 개최 15일 이전) 회장 후보에 관한 자원 혹은 추천의 의사를 서면(또는 e-mail)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.(제출서류: 후보자의 이력서, 공약 등 자원 또는 추천의 변)

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.
2.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